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이 공존하는 현충시설의 지정·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충시설 관리번호 유형에 ‘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’ 유형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현충시설의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현충시설의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유형별 번호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(3)

별지 제2호서식 앞쪽 현충시설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

- [] 독립운동 관련 시설
- [] 국가수호 관련 시설
- []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